

2022년 제3회 경상남도 개방형직위(문화예술회관장) 임용시험 공고

경상남도 개방형직위(문화예술회관장)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12월 15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직위 개요

임용예정직위	임용예정직급	채용인원	주요 업무내용
문화예술회관장	◦ 일반임기제(개방형4호) ◦ 지방서기관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회관 운영 총괄 및 업무의 종합 기획·조정○ 문화예술 공연 기획 및 제작○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연·전시 대관업무○ 도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업무○ 도민 문화 향유권 향상 각종 문화상품의 유치○ 시·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 지원○ 지역 문화예술 진흥○ 기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 연령·성별 제한 없음(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 경력요건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구 분	자 격 요 건
경력 요건	<p>학력 기준 ①</p> <p>◇ 석사학위 이하인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p>◇ 박사학위 소지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p>자격증 기 준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5, 별표5의2 참고
	<p>경력 기준 ③</p> <p>◇ 공무원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p>◇ 민간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부서단위 책임자는 복수의 직원(정규직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상근하면서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임
실적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관련분야] 문화예술, 공연예술, 예술경영 분야 근무경력	

3.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4. 임용 조건

-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 보 수

임용등급	상 한 액	하 한 액
개방형 4호	-	63,430천 원

-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35조(연봉 및 연봉 한계액)를 근거로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름

- 신 분

- 민간인의 경우,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용(근무)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규정에 의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 승진, 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5.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형식요건 심사

- 임용자격요건 및 제출 서류의 이상 유무 심사

○ 2차 시험(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서류심사+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 응시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 전달 및 협상능력 등

※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개인별 프리젠테이션(7분 이내) 포함

6. 시험일정

공 고	응시원서 접수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발표	적격성 심사 (예정)	최종합격자발표 (예정)
'22. 12. 15.(목)	'22. 12. 26.(월) ~ 30.(금) ※ 기간 중 업무시간 내 <09:00 ~ 18:00>	'23. 1. 27.(금)	'23. 2. 6.(월) ~ 7.(화)	'23. 2. 17.(금)

※ 적격성 심사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http://www.gyeongnam.go.kr>)에 게시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http://www.gyeongnam.go.kr>)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대리접수 가능) 및 등기우편 접수

○ 접수장소 : 경남도청 인사과 채용담당(본관 2층)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경상남도청 인사과 채용담당

등기우편 접수 유의사항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정**(택배, 퀵서비스 활용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시 반드시 담당자 전화 확인 후 송부

❖ 우체국 통상환증서(5급(상당)이상 1만원) 또는 직접 방문시 도 세외수입 고지서 납부

❖ 응시표 회신을 위한 일반 편지봉투 동봉(등기용 우표 부착, 수신인 성명주소 기재)

8. 재공고 및 변경공고

-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 내부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해서 재공고
 - 재공고시에는 1차 공고 응시자는 제출한 응시원서로 갈음함으로 별도 응시원서 추가 제출할 필요 없음
-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다시 공고함

9.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붙임 양식) 1부

- 응시수수료 : 경상남도 세외수입고지서 납부(우편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 금액 : 5급(상당)이상 10,000원
- 납부방법
 - (방문접수) 접수 당일 경상남도가 발행한 세외수입고지서를 수령하여 금융기관 당일 납부
 - (우편접수)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를 응시원서 등과 함께 제출
- 유의사항 :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적용 불가

② 이력서(붙임 양식) 1부

- 학력, 자격, 상훈, 경력, 저술, 강의 등 마지막 부분에 연도별 활동경력 구체적 기재
- 단, 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불가)

③ 자기소개서(A4 3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A4 10매 내외 붙임 양식, 요약서 2매 이내 첨부) 1부

- 면접 시 직무수행계획 발표(PPT)가 있을 예정이므로 연관성 있게 준비

⑤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붙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인사위원회에서 별도 조회

⑥ 최종 학력증명서 각 1부(원본)

- 박사 학위는 석·학사 학위, 석사 학위는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모두 제출

⑦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경력 인정범위 해당 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인정 불가)
- 발행기관(기업체)의 직인, 발급담당자 성명 및 서명(날인), 연락처 기재
- 발행기관의 성격 증명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첨부
※ 비정규직(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원본) 1부

- 발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 출력 또는 무인민원 발급기 등
- 발급요령 : 보험가입 전체기간에 대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경력증명서의 경력 검토용)
-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 발행기관명과 확인서의 근무기관명이 불일치할 경우 동일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

⑨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 어학능력성적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학위·연구논문 사본 등 연구실적 목록 및 기타 실적 증빙서류 등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양식) 1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 제출
- 모든 증명서는 발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증명서 발급일은 공고일 이후를 원칙으로 하되 자격·경력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도 제출이 가능함
(예시 :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0.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람
-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 또는 합격 결정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림(예: 졸업증명서 등)
- 2차시험(적격성 심사)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여도 추가 합격자는 결정하지 않음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바람
- 특히,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자격·경력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 제출가능)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내의 서류만 인정되며,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받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서류상의 기재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재함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별도 공고함
- 기타 사항은 경상남도 인사과(채용담당 ☎055-211-3523)로 문의바람

11. 코로나19 예방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장에는 응시자 외에는 출입을 전면 통제함
 - 시험 응시자는 손소독,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험 진행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여야 함
 - * 응시자 신분 확인 절차 진행시에만 마스크를 벗고 확인
 - 코로나 19 확진자, 고열(37.5℃ 이상),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는 접촉자 및 유증상자는 해당부서(경상남도 인사과, ☎055-211-3523)로 사전 신고, 시험실시기관의 조치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응시자 중 시험당일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을 이용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 될 수 있음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일까지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체크 등을 통해 개인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 ※ 모든 응시자는 본인의 책임 아래 코로나19 예방조치 소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